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(특수직무 유기)·뇌물수수·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·강요(인정된 죄명:강요방조)·공무상 비밀누설 교사



[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. 5. 13. 2009고54]

【전문】 【피고인】 【검 찰 관】육군 대위 김유돈 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재석외 3인 【주문】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.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의 점과 공소외 5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교사·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, 공소외 8과 공소외 9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, 공소외 11로부터 뇌물수수 의 점은 각 무죄 [이유] 1 [이유] 1 [이유] 1 [이유] 1 【이유】] [이유] 1 [이유] 1 【이유】 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